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구의 지정방식을 법률로 상향 이동하고,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정·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59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구의 지정 방식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 제1항의 삭제 등)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함
나.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 조항 정비(안 제12조의4 제2항 개정)

법률 제9조의2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과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육성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를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제한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① <u>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는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u> 1. <u>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육성하는 방식</u> 2. <u>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육성하는 방식</u> ② <u>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6. (생략) ③ <u>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지정하는 특구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3.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등) ① <삭제> ② <u>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u> 1. ~ 6.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육성하는 -----.</u> 1. ~ 3. (현행과 같음) ④ -----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가능한 총 면적(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범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제3항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꽃보라 사무관	
연 락 처	(044) 202 - 4743